

Samil PwC Monthly Newsletter

October 2022

✔ Hot Topic

금리 인상의 시대, 부채 점검: (2부) 기업부채



삼일회계법인

Contents

Hot Topic

02 금리 인상의 시대, 부채 점검: (2부) 기업부채

ESG

16 국내외 ESG 동향

GAAP

21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금융위원회)

GAAS

27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30 감리 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금융감독원)

32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TAX

36 최신 세무뉴스

38 최신 세무예규판례

K SOX

41 K SOX 동향

Hot Topic



금리 인상의 시대, 부채 점검: (2부) 기업부채

1. 배경

-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미국 FRB는 2022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10월 12일 50bp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음(현재 한국 기준금리 3.0%)
- 유례없이 빠른 금리 인상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음. 문제는 최근의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가파른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임. 이럴 경우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는 시중 유동성 위축과 더불어 경기 둔화를 야기하게 됨. 또한 채권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므로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음
- 이에 삼일PwC경영연구원에서는 물가 상승 기조 하의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 및 기업의 부채를 점검 중이며 지난 자료에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분석한 데 이어(2022년 9월), 금번에는 기업부채를 점검하고자 함
- 기업의 부채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원동력이 되어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비생산적인 부문이나 한계기업 등에 필요 이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자산가격 상승·좀비기업 양산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음

… 고물가 하의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기업부채 현황 점검 및 위험 산업군 분석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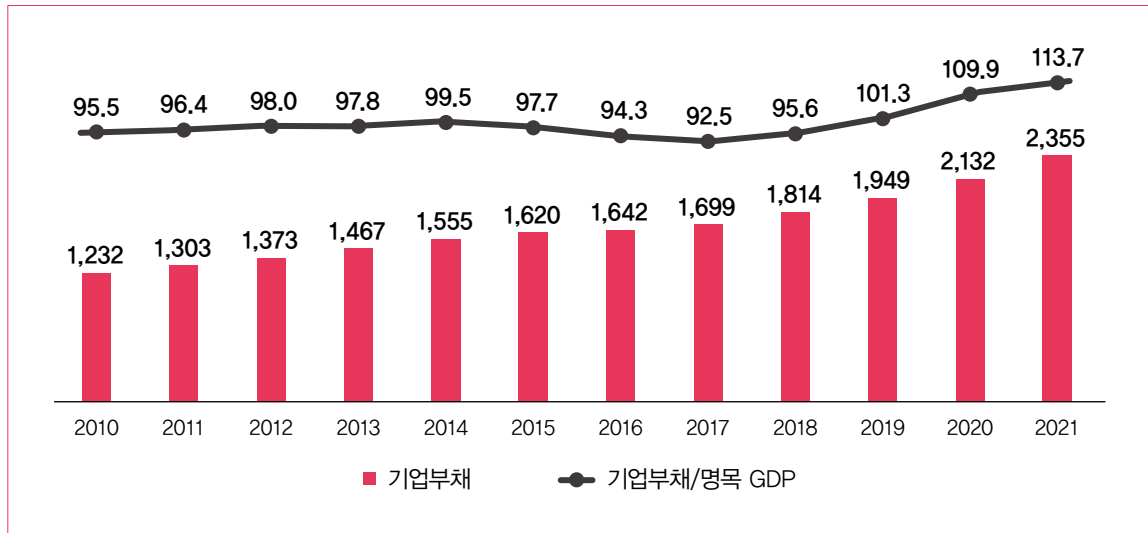


2. 기업부채 현황 및 분석

(1) 기업부채 현황

- 기업부채는 크게 영업부채와 금융부채로 구분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출과 채권 발행을 포함한 금융부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함
- 총 국내 기업부채는 2021년 말 기준 2,355조 원으로, 명목 GDP 대비 부채비율 113.7%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당시 수준(1997년 말 107.1%)을 상회하고 있음. 글로벌 국가와 비교 시에도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인데, 37개 주요국 중 6위에 위치함. 한국보다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곳은 홍콩(293%), 레바논(265%), 중국(155%), 베트남(137%), 싱가포르(135%)의 아시아권 국가들임

[도표 1] 기업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부채비율 (단위: 조 원, %)



*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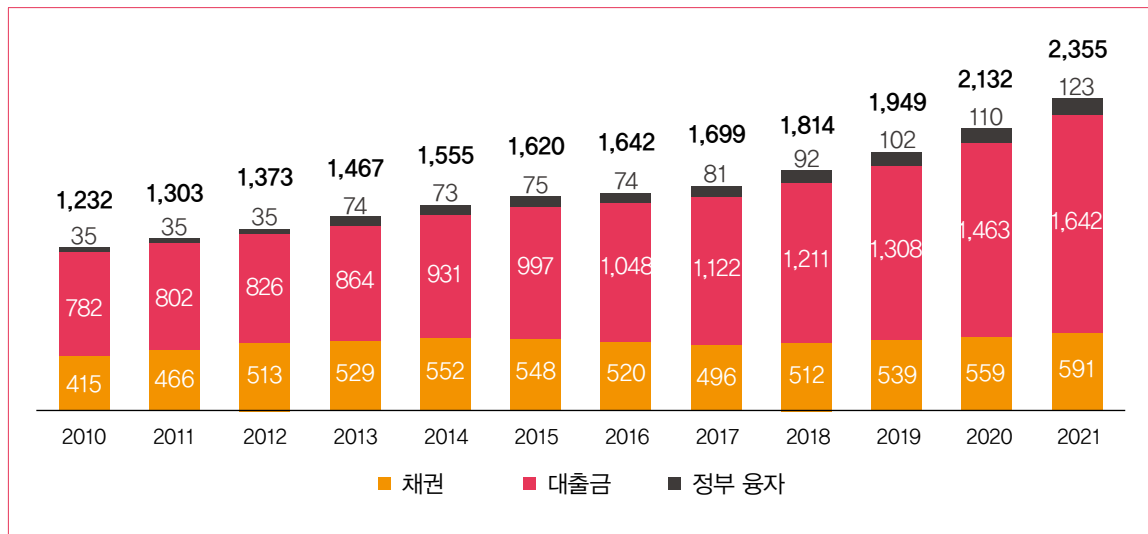
[도표 2] 글로벌 주요국 기업부채 현황 (단위: %)

순위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	순위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
1	홍콩	292.9	6	한국	115.7
2	레바논	264.6	7	일본	115.2
3	중국	154.8	8	유로	110.3
4	베트남	137.4	9	칠레	103.4
5	싱가포르	135.3	10	러시아	82.5

*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202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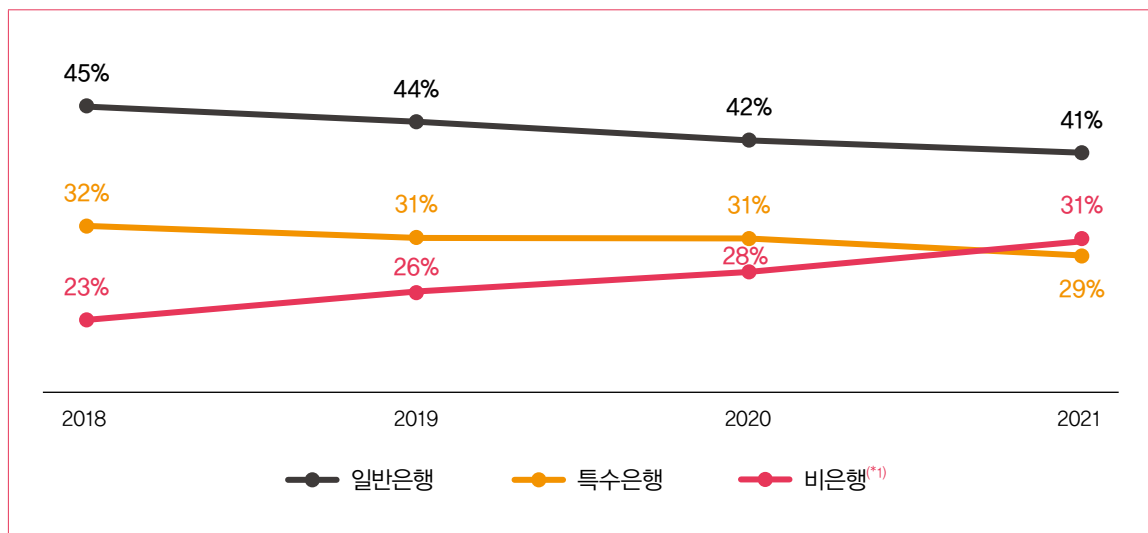
- 기업부채는 지난 5년간(2016년 1,642조 원 → 2021년 2,355조 원) 43.4% 증가하였는데, 항목별 기여도는 대출금이 36.2%p로 가장 크고, 채권과 정부 용자가 각각 4.3%p, 2.9%p를 차지함
-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채권 발행 등의 직접금융보다 대출을 선호함에 따라 대출이 동 기간중 1,048조 원에서 1,642조 원으로 56.7% 증가하며, 기업부채의 70%를 차지하게 됨
- 대출 내에서는 비은행권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2018년 23% → 2021년 31%)이 부정적임. 상대적 고금리인 비은행권 속성 고려 시, 금리 상승 추세에 따라 이자부담 우려가 증대되기 때문임

[도표 3] 기업부채 추이: 대출금의 급격한 증가 (단위: 조 원)



* 자료: 한국은행, 기말 기준

[도표 4] 대출금 조달 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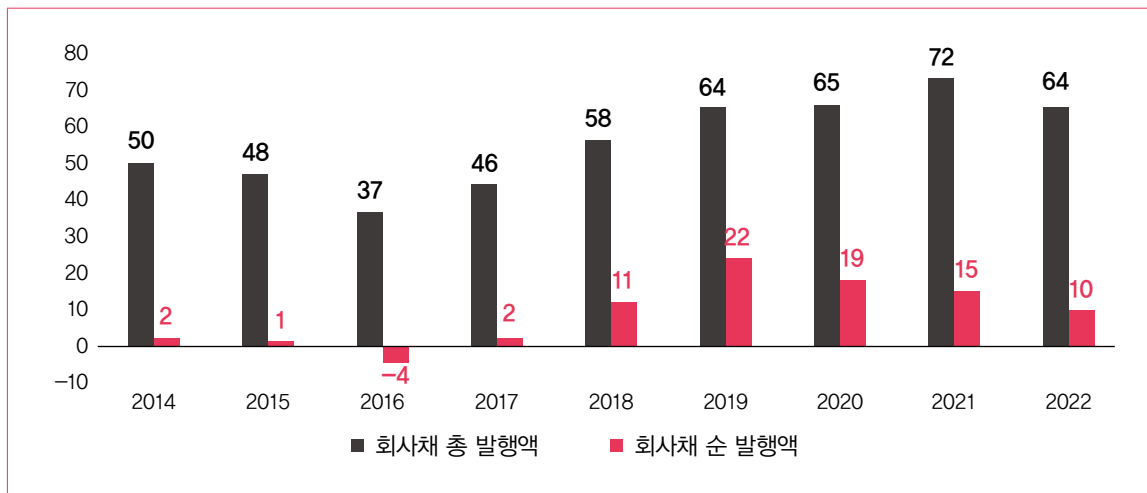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기말 기준

(*) 비은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 한편 부채의 한 축인 국내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보면,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채권 발행액을 늘려 왔음. 연도별 회사채 순 발행액 규모를 보면, 2019년 이후 2022년 중반까지 누적으로 60조 이상임. 채권 발행의 목적은 ① 2019년은 경제 둔화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 또는 ② 2020년 이후는 팬데믹으로 소비패턴 및 산업 지형 변화에 따른 향후 성장 동력을 위한 설비투자 및 M&A를 위한 자금 수요였음. 채권 발행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2021년 양호한 실적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이후 채권시장 약세로 회사채 발행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임. 다만 향후 현금 보유 수준이 저하되고 현재와 같이 크레딧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음

[도표 5] 국내 기업 회사채 발행 추이: 2018년 이후 채권 발행 규모 크게 확대 (단위: 조 원)



* 자료: Bloomberg

(2) 기업부채 분석: 대출 속성 분석

- 기업부채가 채권보다는 대출금을 중심으로 증가한 점과 산업별 채권 발행 자금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중심으로 차주의 속성을 분석하였음

① 기업 규모별

2021년 기준 금융기관 기업대출은 1,540조 원으로, 전체 기업부채의 65%를 차지. 이 중 대기업 대출 210조 원, 중소기업대출 1,330조 원으로, 중소기업 관련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도표 6] 기업부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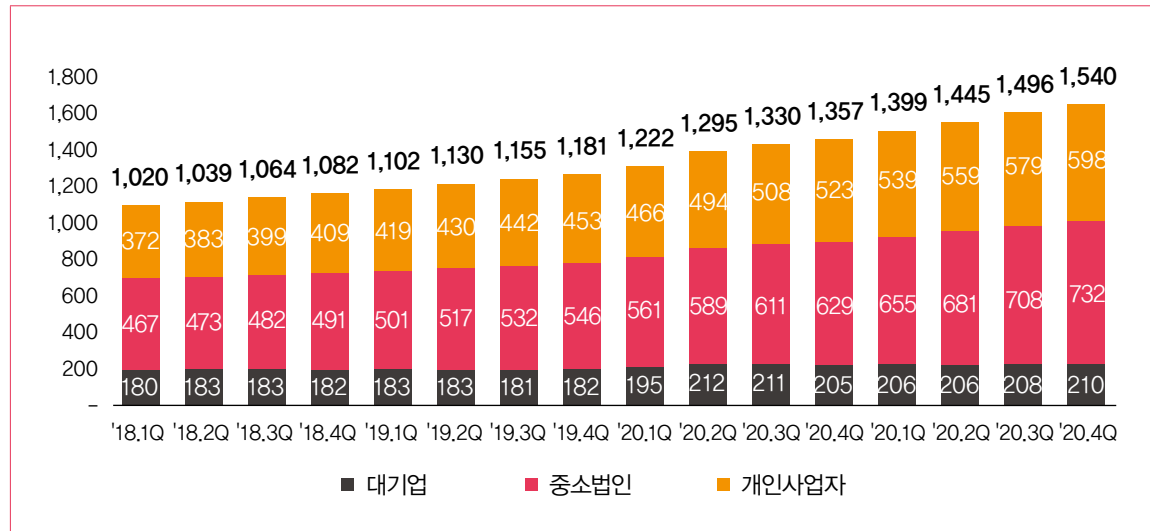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21년 말 기준

(*) 주요 대출 기관(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

지난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 대출은 200조 원 내외를 유지하며 양호한 상황임(2018년 1분기 180조 원 → 2021년 말 210조 원).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며(2018년 1분기 839조 원 → 2021년 말 1,330조 원), 전체 기업부채 증가를 견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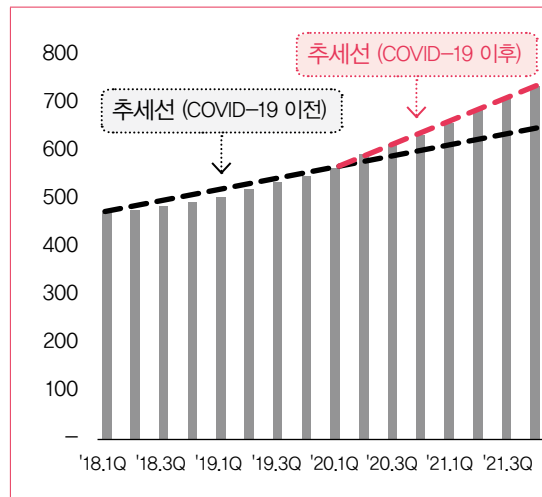
- 동 기간 중 중소기업 대출이 57%, 개인사업자 대출은 61% 증가하였고 특히 COVID-19 이후 유례없는 초저금리 및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대출을 더욱 가파르게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함

[도표 7] 금융기관 기업대출 분석: 기업 규모별 (단위: 조 원)



*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도표 8] 중소기업 대출 (단위: 조 원)



[도표 9] 개인사업자 대출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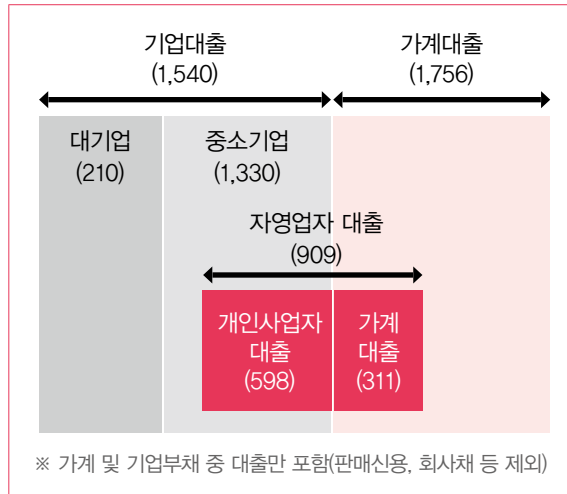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부문으로도 퍼져 있어, 최근의 급격한 대출 증가는 경기 하강 상황 고려 시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점증되고 있음

- 자영업자 대출은 총 909조 원으로 사업자 대출(기업대출) 598조 원과 가계대출로 311조 원으로 구성됨 (2021년 기준). 이는 COVID-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며, 모든 경제 주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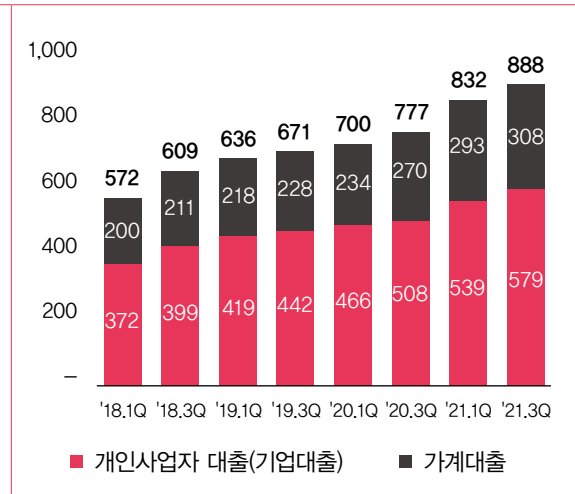
[도표 10] 자영업자 대출 구조 (2021년 말 기준)

(단위: 조 원)



[도표 11] 자영업자 대출 증가 추이

(단위: 조 원)



*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② 업종별

업종별 대출 집중도*를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업이 각각 2.6과 2.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제조업은 0.3~1.5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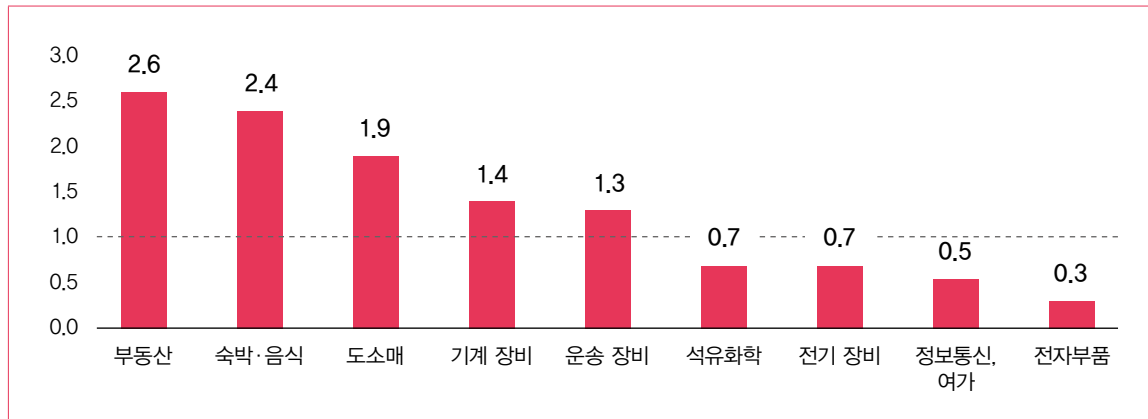
- 부동산업은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자금이 집중되었으며, 숙박·음식업은 COVID-19 기간 중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수요 증대 및 정부 금융지원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제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출 집중도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GDP 기여도가 높은 전자부품, 전기 장비 및 석유화학의 대출 집중도는 모두 1을 하회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기업부채가 크게 급증하였으며, 동 자금은 부동산업 및 숙박·음식업으로 집중되었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조정,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자영업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현시점에 해당 업종에 대한 건전성 우려 증대됨

* 기업대출의 산업별 유입 비중을 산업별 GDP 비중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지표로, 해당 지표가 1보다 크면(작으면) 산업의 GDP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적은) 대출이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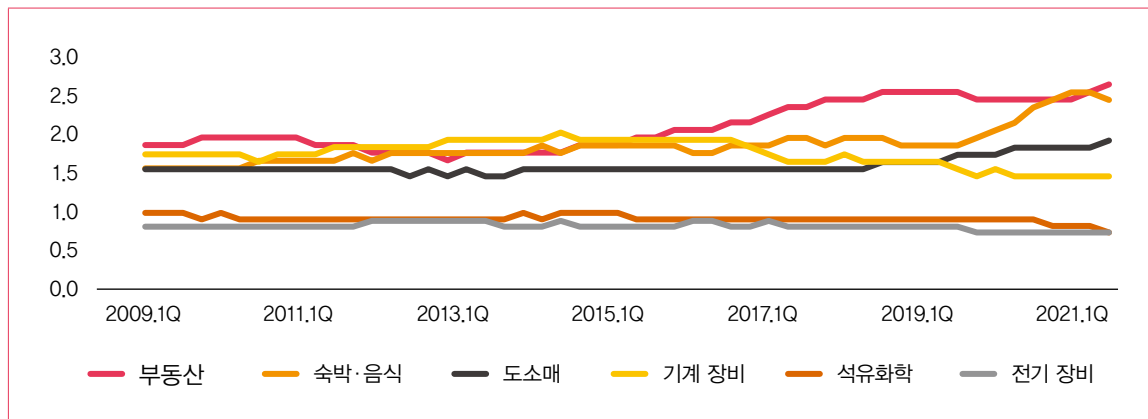
$$i \text{ 산업에 대한 대출 집중도} = \frac{i \text{ 산업의 기업대출} / \text{전체 기업대출}}{i \text{ 산업의 GDP} / \text{전체 GDP}}$$

[도표 12] 산업별 대출 집중도 (2021년 말 기준)



* 자료: 한국은행

[도표 13] 주요 산업 대출 집중도 추이



* 자료: 한국은행

(3) 건전성 분석

① 기업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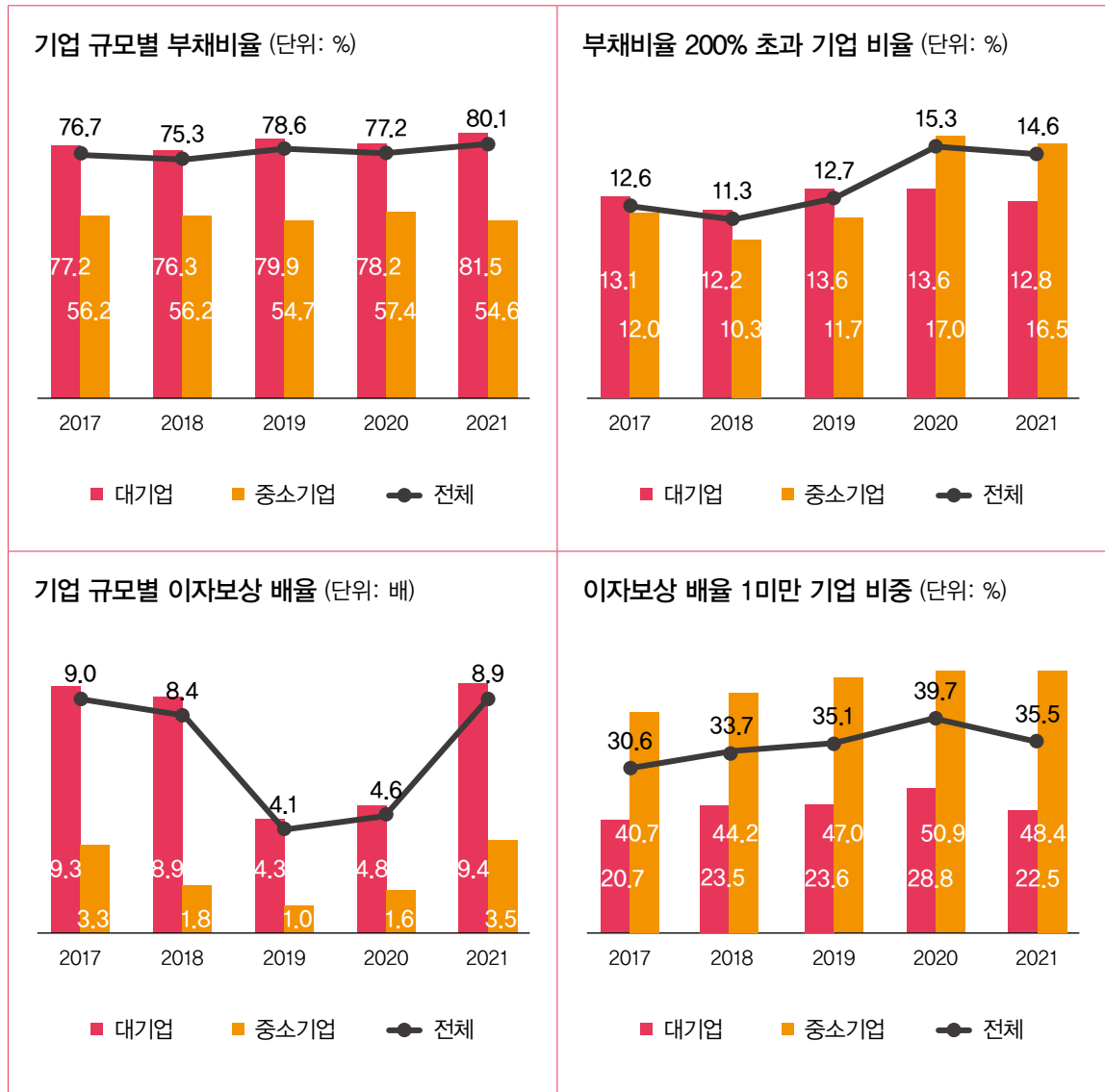
| 일반 기업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21년 말 80.1%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0년 말(77.2%)에 비해 소폭 상승.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과다부채 기업의 비중은 2020년 말 15.3%에서 2021년 말 14.6%로 하락. 전체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54.6%로 양호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과다부채 기업 비중이 2020년 이후 급증하여, 중소기업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기업의 이자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 이자비용)은 2021년 8.9배로 영업이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4.6배) 대비 큰 폭 상승하였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은 2020년 39.7%에서 2021년 35.5%로 하락한 것은 긍정적인

*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610개 기업(대기업 1,300개, 중소기업 1,310개)을 대상으로 분석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06.)」)

[도표 14] 기업 규모별 건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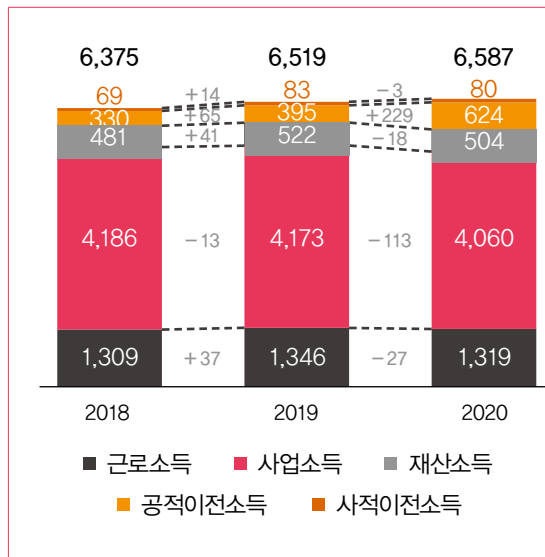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KIS-Value, 기말 기준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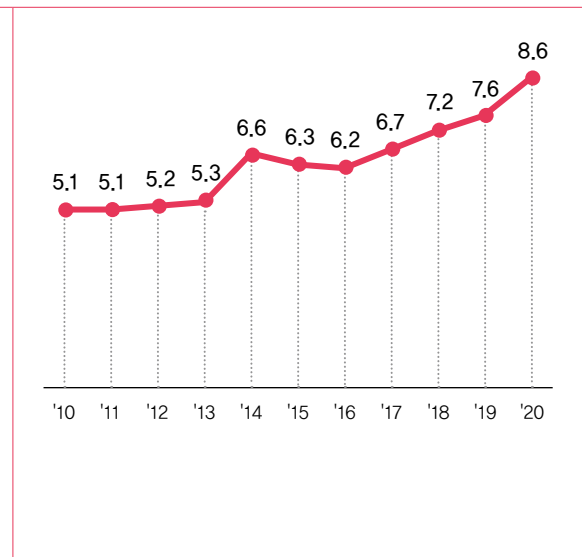
COVID-19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의 주된 소득 원천인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기반 채무상환 능력이 하락하였음.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전 영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공적이전소득(COVID-19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229만 원 증가하며 그나마 총 소득을 보전시킴. 그러나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이 높음. 또한 COVID-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이하 '결손사업자')의 비중이 숙박·음식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점 고려 시, 개인사업자 부채가 경제 전반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도표 15] 개인사업(자영업) 가구 소득 구성
(단위: 만 원)



* 자료: 통계청

[도표 16] 결혼사업자 비중
(단위: %)



* 자료: 국세청

② 업종별

일반 기업

산업별* 건전성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영역은 에너지, 조선, 호텔·레저 서비스, 유틸리티 산업임. 에너지 부문은 유가 급등락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시기였으며, 유틸리티는 에너지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격에 탄력적으로 전가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인하여 부채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적자로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업종은 조선, 유틸리티, 호텔·레저 서비스임. 특히 조선과 호텔·레저 서비스업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며, 자산 건전성이 악화됨. 다만, 조선업은 2022년 선박 수주가 증가하며 업황 개선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며, 유틸리티 부문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영역임

… 지난 2년간의 영업 부진 및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해 호텔·레저 서비스업의 재무부담이 가중됨. 또한 COVID-19 장기화 및 고환율 등의 비우호적 환경 고려 시 당분간 해당 업종의 고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업종별 상세 분석을 위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39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진행

[도표 17] 업종별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단위: %, 배)

	부채비율 (%)				이자보상배율 (배)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	105.8	121.3	140.7	153.6	6.6	3.5	-2.5	6.4
화학	230.3	248.3	93.7	88.9	7.1	3.6	5.0	14.9
철강	78.9	75.6	77.2	77.8	4.8	3.3	2.7	14.9
건설	133.1	135.0	144.1	126.2	5.8	5.0	5.4	7.3
기계	148.4	148.9	141.4	131.6	2.7	2.5	1.9	4.1
조선	135.9	134.1	136.2	161.5	0.3	0.2	-1.1	-8.7
자동차	109.1	113.8	124.7	126.0	5.6	6.8	5.0	11.3
호텔·레저 서비스	70.1	90.1	114.4	118.3	10.0	6.6	-5.3	-1.1
소매(유통)	90.0	120.8	126.1	128.9	5.2	2.5	1.9	2.1
음식료	111.2	99.4	87.3	98.7	5.4	4.1	6.6	7.2
헬스케어	54.7	59.2	59.3	59.5	4.9	4.0	7.1	9.6
소프트웨어	119.8	145.9	120.1	53.8	23.6	19.0	23.5	18.2
반도체	37.8	35.9	38.6	43.2	87.4	27.8	40.8	73.7
디스플레이	113.1	143.5	134.9	121.7	2.9	-2.1	1.5	5.3
통신 서비스	100.9	114.6	109.2	135.6	4.6	3.7	4.7	5.8
유틸리티	176.0	199.8	195.8	230.1	0.5	0.3	2.0	-1.5

* 자료: Quantwise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2020년 평균 사업소득은 4,06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7% 감소됨.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식당·카페·학원·체육시설 등에 영업제한이 직접적으로 부과되었고, 설계사 등을 통한 대면 영업이 주력인 보험업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사업소득 증감률은 숙박·음식업 -18%, 금융·보험업 -14%, 교육 서비스업 -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23%로 집계되었음

[도표 18] 업종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득 추이 (단위: 만 원, %)

구분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 (%)
자영업자 계	4,186	4,173	4,060	-3%
농업·임업·어업	2,580	2,311	2,274	-2%
도소매업	4,584	4,512	4,507	0%
운수 및 창고업	3,890	3,871	3,852	0%
숙박·음식점업	4,567	4,590	3,774	-18%
제조업	5,075	4,990	4,742	-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74	3,120	3,045	-2%
건설업	5,068	4,894	5,426	11%
금융·보험업	4,200	4,441	3,837	-14%
교육 서비스업	4,886	5,440	5,036	-7%
부동산업	4,016	3,639	3,848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00	5,515	6,117	1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3,775	3,836	2,952	-23%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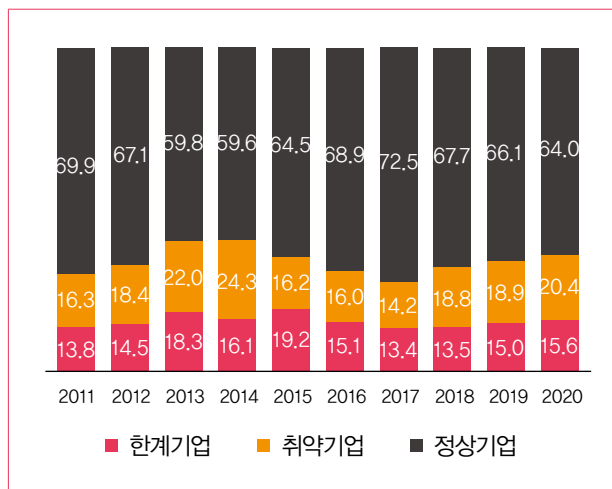
3. 결론

(1) Summary

-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 위주로 기업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기업대출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짐
- ① 부동산, 숙박·음식 등의 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부동산업은 자산 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 해당 영역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 가격 급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숙박·음식업으로의 대출 증가는 COVID-19 기간 중 소득 및 매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파악되며, 이는 곧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됨을 의미함
- ② 일반기업의 경우 2021년 매출 및 영업력 회복 등에 따라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 한국은행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을 바탕으로 한계기업 추이를 조사*하였는데, COVID-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기업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또한 2021년 기업 전반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회복된 점 고려 시, 아직까지 기업 전반적으로 체력이 양호한 상황임. 다만, 호텔·레저 서비스업은 지난 2년간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향후 정상화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해당 업종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 ③ 전체 기업대출 중 36%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COVID-19 기간 이후 급증하였음.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형태로 분류되는 해당 대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형태로도 연결되어 있으며, 총 대출(가계+기업) 내 27%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 추세 및 정부 금융지원 조치 종료 시점 고려 시, 향후 개인사업자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기업 영역뿐만이 아닌 가계 부문까지 경제 전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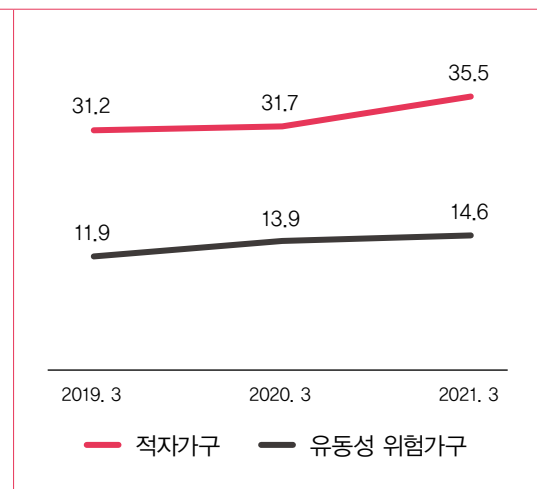
* 외감기업 중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기업(2020년 말 기준 22,687개 기업, 대기업 4,400개, 중소기업 18,287개) 대상

[도표 19] 일반기업: 취약 및 한계기업^(*) 현황
(단위: 만 원)



* 자료: 통계청

[도표 20] 자영업자 중 적자가구 및 유동성 위험가구^(*)
(단위: %)



* 자료: 국세청

(*)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기업을 취약기업, 이들 중 취약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구분

(*) 적자가구: 가구 소득에서 필수 지출과 대출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값이 마이너스(-)인 가구

유동성 위험가구: 적자가구 중 보유하고 있는 유동 금융자산을 활용한 적자 총당 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

(2)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부채는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어려우며, 줄일 수 없다면 연장하거나, 다른 부채를 일으켜서 갚아야 함. 이럴 경우 동일한 부채금액이더라도 금리가 상승기에 있을 경우는 '차환'을 하거나 대출 연장 시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심지어 경기 부진으로 유동성이 위축 시에는 차환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음
- 2017년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의 경우 이자비용 부담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함. 현재는 2012년 이후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중금리가 앞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경기 둔화(수출 부진 등)로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른 현금흐름 창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은 기업 운영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대출뿐 아니라 채권의 경우도, 2020~2021년에 발행 물량이 많아서 2023~202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부담이 높음. 시중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에 따라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2021년도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양호해 만기도래 부담도 크지 않았으나, 내년 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금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보유 및 부채 수준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서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 전환 유도 등의 출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도 고려해야 될 것임. 또한 금융권에서는 신규 대출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ESG



국내외 ESG 동향

E Environmental

S Social

G Governance

1. ISSB, 공시 초안에 대한 전 세계 의견 청취 결과 발표 E

지난 3월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가 발표되었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①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예: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②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의 보고 기업 범위가 동일해야 하며, ③ 공시 시기도 재무제표의 공시 시기와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3월에 사업보고서와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요성'(Materiality)의 정의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재단 이사회 총회를 오는 10월 25~27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 [ISSB, 지속가능성 공시 사업보고서에 포함 의견 다수](#) - ESG경제 (2022. 9. 15.)
- [ISSB,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찬성 의견 다수](#) - ESG경제 (2022. 9. 15.)
- [IFRS 재단 이사회 한국서 총회...“글로벌 ESG 공시기준 도입 논의”](#) - 이데일리 (2022. 9. 27.)



2. PwC 넷 제로 성과 지수 2022 발표 E

PwC가 지난해 G20 국가의 탈탄소화율*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2021년 G20 국가의 탈탄소화율 목표를 -12.9%로 설정하였으나 COVID-19 이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영향으로 실제 탈탄소화율은 -0.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감축률이다.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 1.5°C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에는 연평균 탈탄소화율이 -15.2%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탈탄소화 실적이 가장 좋은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4.6%)이고, 한국의 경우 탈탄소화율은 -1.6%로 G20 국가 중 7번째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년도 -6.0%에서 대폭 둔화된 수치로, 한국 또한 COVID-19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결과로 해석된다.

* 탈탄소화율: 탄소배출량 감축률을 의미하며, '탄소집약도(tCO2/\$mGDP: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율로 계산된다.

[관련 원문 보러가기]

- [PwC 넷제로 성과 지수 2022](#) - PwC

3.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략 방안 수립 필요 E

EU로 수입되는 9개 품목(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이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9개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는 규모는 2021~2022년 연평균 기준 85억 1천만 달러(한국 대비 EU 수출액의 15.3%)인 것⁽²⁾으로 나타났다. EU가 2030년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Scope 3까지 CBAM을 확대 적용할 경우를 가정할 시, 국내 산업 부담액은 약 8조로 추산되어 국내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강화와 산업계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 과도 기간, 전면 도입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최종안은 EU 이사회(EU Council)와의 최종 협상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이에 따라 향후 협상 내용 등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필요

(2) 출처: 한국무역협회,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2022. 4. 1.)

[관련 기사 보러가기]

-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시 국내 기업 8조 2,456억 원 부담](#) - 에너지플랫폼뉴스 (2022. 9. 20.)

4. RE100 이행 위한 국내 산업계 부담 증가 우려 E

국내 주요 기업이 잇따라 RE100을 선언한 가운데, 당장 공급받을 수 있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2%에서 2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주요국 대비 높은 가격 등의 문제로 RE100 달성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로 총 발전량 577TWh에서 43TWh 가량 차지^(*)한다. RE100에 가입한 국내 24개 기업 중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주요 10대 기업의 2021년 전력 사용량(65TWh)과 비교 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43TWh)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지원 혜택, 기업 투자 증가로 인해 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진 미국^(**) 등에 비해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해 기업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출처: 2021년 한국전력통계(제91호), 한국전력공사 (2022)

(*2) 출처: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 코트라 (2021)

[관련 기사 보러가기]

- [삼성전자 'RE100' 가입, 비상걸린 산업계](#) - 중앙경제 (2022. 9. 29.)
- [삼성·LG 'RE100' 선언했지만 ... 재생에너지 비싸 '전전공공'](#) - 뉴시스 (2022. 9. 29.)

5. 국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강화될 계획 E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 검증 결과를 국외에서도 통용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넓혀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을 쉽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심사 담당 민간인력을 늘리고 인증 업무를 민간 업체에 개방해, 탄소배출 검증 시장에서의 민간 역할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 환경부가 2001년부터 시행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수송 및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제도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 [정부 "국내 탄소배출 검증 결과 국외에서도 통용 추진"](#) - 한겨레 (2022. 9. 30.)
- [비상경제장관회의\(9월 30일\) 개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9. 30.)

6.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필요 S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총 1천억 원...역대 최고 \(종합\)](#) - 연합뉴스 (2022. 9. 14.)

7. 준법 차원을 넘어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필요 G

최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자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한 이 보고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준법 차원을 넘어 최적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50%였는데, 2조 원 이상의 경우 55%로 나타나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외이사 비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정 자본시장법 등의 영향으로 신규 선임 이사 중 여성 비율은 14%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과반수, 그 외 4분의 1 이상

[관련 원문 보러가기]

-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 - 삼일PwC

GAAP

회계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금융위원회)

2022년 9월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감독지침의 성격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지침의 성격

-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회계감리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가능
-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

감독지침의 주요 내용

1.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① 임상 승인 신청 전 지출

- **(쟁점)**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개발 관련 선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

* 기존 감독지침(2018년 9월)을 통해, 원칙적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하였으나,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음

[도표 1] 약품 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 단계(제약·바이오 감독지침_2018년 9월 19일)

유형	자산화 가능	설정 근거
신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최근 10년간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 최종 승인율이 약 50%(미국 제약·바이오 업계 통계)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연구결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최종 승인율 약 60%

- **(안내사항)** 회사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예: 임상 물질의 구매·생산 원가 등)도 자산화 가능

[참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① 회사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임상 개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의 임상 개시 승인 경험을 제시하는 경우
- ② 이미 다른 국가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이 되었고, 동 국가에서의 심사 기준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③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지만, 그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3의 외부 전문가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기존 감독지침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개발비 자산화 가능 단계로 본 것은, 적어도 식약 당국의 임상 1상 개시 승인은 있어야 개발활동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 기존 감독지침(금융위, 2018년 9월 19일)에 따라 임상 3상 개시 등*을 기준으로 자산화하는 경우에도, 동 지침을 임상 3상 개시 등 승인 신청 전 지출에 대한 자산화 여부 판단에 적용 가능

* ① 신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② 제네릭: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③ 진단시약: 제품 검증

② 개발 완료된 의약품의 다른 시장 판매허가를 위한 지출

- **(쟁점)** 개발이 완료되어 이미 특정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의 자산화 가능 여부
- **(안내사항)** 특정 국가에서 판매 중이더라도, 해당 지출이 또 다른 국가의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

* 1038.BC86: ① 최초에 평가된 성과 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②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경우 후속 지출을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

- 이때, 판매 운송과 관련된 원가(물류비 등)도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판매 승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운송 밸리데이션이 기존 제품에 연속되는 추가 개발^(*1)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1)이나 연구^(*2)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
- 한편, 다른 국가에서의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활동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등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3)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발생 시 비용 처리

(*1) 개발활동: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 개발비(자산) 인식 가능)

(*2) 연구활동: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비용 처리)

(*3)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

③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의 구분 및 개발활동에 재고자산을 사용한 경우

- **(쟁점)** 기업이 의약품 등의 필수 개발 과정에 자사 보유 재고자산을 투입·사용한 경우, 동 재고자산의 개발비 자산화 가능 여부
- **(안내사항)** 개발과제로 선정된 최종안을 시험하는 활동에서 재고자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료 원가(재고자산 등)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로서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개발비(무형자산)로 대체
 - 재고자산이 판매 불가능하여 감액하였고 여전히 판매 불가능 상태라면, 재고자산을 감액했던 원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한 금액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없음
 - *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 판매 가격 - 추가 예상 완성 원가 - 판매비용
 - 한편, 선정된 최종안을 시험하는 운송 밸리데이션*과 같은 활동이 의약품 판매 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인 운송 검증 과정이라면 개발활동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개발활동이 완료된 후, 단순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이용하던 운송수단을 변경·대체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운송 밸리데이션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자산 인식 불가)
 - * 운송 밸리데이션: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밸리데이션 과정의 일환으로, 운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이 계획한 대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

※ 기업은 의약품 판매 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로 다양한 유형의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수행하며, 그 중 하나가 운송 밸리데이션임 ⇨ 동 지침을 기타 유사한 밸리데이션에도 적용 가능

2.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 시 수익인식 방법

- **(쟁점)**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의 경우, 라이선스 매각에 대한 수익을 그 밖의 부대조건과 구분하여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함께 제공하는 임상시험 용역 등

- **(안내사항)** 다음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한다면 그 밖의 부대조건과 별개로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매각 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 가능*

* 회사(Licensor)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에게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를 이전한 경우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 요건 (①과 ② 모두 충족)

- ① 임상 용역을 회사(Licensor) 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어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경우*

* (예) B사(Licensee)는 반드시 A사(Licensor)가 아니더라도 제3의 임상시험 대행 기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상 용역이 목표 시장 내 판매 허가 획득을 위한 의약품의 효과·안전성 등의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 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 (예) 다른 국가에서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인 경우

- 이때, 그 밖의 부대조건(라이선스 매각분 외)은 라이선스의 수익인식과 별개로 판단하여, 향후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으로 인식
- 한편, 위의 ① 또는 ②를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매각분만 별개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 이 경우는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을 하나로 보아 고객에게 단일의 수행 의무가 언제 이행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 인식

[참고]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① 회사(Licensor)가 임상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의약품이 유의적으로 변형될 것으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고객, Licensee)이 기대하는 경우

- ② 통상 전 임상단계와 같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최종 임상용 의약품을 변형시키는 경우

- 단, 임상의 진행 단계 또는 의약품의 성격 등 상황에 따라서 용역 등이 최종 임상용 의약품을 변형시키는 정도는 다를 수 있음

* 의약품의 구조·제형 등이 확정되기 전으로서, 비임상시험 단계(예: 독성시험)를 의미

- ③ 임상시험이 실패하면, 회사(Licensor)가 라이선스 제공 대상(후보물질)을 유의적으로 변형해야 하고 양자간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경우

※ 대가의 환불 가능성은 계약대가의 추정(변동대가) 시 고려할 뿐, 수행 의무 판단과는 무관

3.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 **(쟁점)** 무형자산(예: 특허권, 라이선스)을 타기업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익(순매각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의 회계처리 방법
- **(안내사항)** 주된 영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이라면 영업손익임
 - 특정 거래가 1회성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참고] 무형자산 매각 관련 주된 영업활동 판단 시 고려 가능한 지표의 예시

- ① 정관에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으로 구체적 적시가 되어 있는 경우
- ② 무형자산 매각이 외부에 알려진(예: 영업보고서, IR 자료 등)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과 일관되는 경우
- ③ 무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조직·인력, 향후 사업 계획 등이 주된 영업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

- 무형자산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매각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며,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각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 예를 들어,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을 통한 투자손익도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단된다면 해당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 가능

[참고] 영업손익 분류의 예시

- ① 유가증권처분손익은 제조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나,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분류
- ② 지분법손익도 제조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분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보러가기)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

[도표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사항 (외부감사법 제8조)

구분	내용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
감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보고하고, 평가 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상장법인)·검토(비상장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표명

- 법규 위반 시 제재: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 결과 분석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 현황

- 2019, 2020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2015~2018년)의 위반 평균 (약 40.5건) 대비 다소 증가, 이는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COVID-19 등에 영향으로 판단

[도표 2]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위반 회사 점검 결과 (단위: 사)

회계연도	내부회계 미구축		내부회계 미보고		감토의견 미표명		위반 합계	
	회사	과태료 면제*	대표자 등	과태료 면제*	감사인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2015	34	28	5	3	6	1	45	32
2016	35	28	2	1	10	3	47	32
2017	36	33	2	-	4	4	42	37
2018	19	14	2	1	7	-	28	15
2019	22	13	15	4	4	-	41	17
2020	36	26	13	6	7	-	56	32
계	182	142	39	15	38	8	259	165

* 회생 절차, 폐업, 임직원 수 5인 이하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②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위반

- (회사 유형별) 위반 회사 58개 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7개 사(유가증권 1개 사, 코스닥 6개 사)이며, 대부분은 비상장법인(51개 사)
 - 비상장법인은 관리 인력 부족, 법규 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
- (감사의견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감사의견거절은 38개 사로 대부분(66%)을 차지
- (과태료 부과) 위반회사 58개 사 중 19개 사에 대해 각 300~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 원인 분석

- 중요한 의사결정자 부재로 미구축
경영권 분쟁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상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없는 경영권 공백 상태 기업이 다수를 차지
- 회생 절차 신청으로 미구축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과태료를 면제 하나, 회생 절차 개시 이전 연도와 워크아웃 진행 회사는 구축 의무 대상에 해당하나 착오로 위반

③ (대표자·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및 평가 의무 위반

- (보고·평가) 대표자 및 감사는 운영 실태와 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였으나,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28건)
- (과태료 부과) 위반회사 28개 사 중 18개 사(26인)에 대하여 각 300~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 원인 분석

- 보고 누락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운영실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대표자 및 감사는 해당 내용을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
- 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미보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내부회계 관련 보고를 진행하지 못함 (과태료 면제)

④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 (회계법인 유형별) 위반 감사인 11개 사 중 등록회계법인(상장회사 감사 가능)은 2개 사이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법인
- (감사의견별) 피감사회사 12개 사에 대한 감사의견 중 의견거절이 5건
- (과태료 부과) 위반 감사인 11개 사에 대하여 각 300~1,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 원인 분석

- 내부회계검토의견 미표명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내부회계 검토를 수행하고 의견까지 작성하였으나 착오 등으로 검토 의견 공시 단순 누락
- 회사의 미구축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경우, 검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

3. 유의사항

- 최근 다수의 횡령 사건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여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감독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GAAS

감리 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개정안 시행 (금융감독원)

1. 배경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 (단,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은 2022년 5월 31일 이후 착수한 감리 건부터 적용)

2. 주요 개정 내용

① 감리 절차 개선 관련

- **(감리·조사기간 명문화)** 원칙적으로 1년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 2022년 5월 31일 이후 착수한 감리 건부터 적용
 -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 기재,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중단한 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조사기간 연장 시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통지
-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 시기 개선 및 복사 허용
 -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 허용

② 감사인 감독제도 관련

-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방법 등 구체화
 - 평가지표별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량지표(23개)는 매년, 비계량지표(11개)는 감사인 감리 등 실시 시 평가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의무 관련 세부사항 신설
 -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 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
 -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 보고.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보고

③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 등록·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 변경·신설
 - 등록회계법인만 감사인 군(群)이 적용됨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회계법인 서식 신설
- 사실상 감사 불능 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 마련
 - 감사인 미선임을 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연락 두절·폐업 간주 등으로 감사 불능인 경우, 지정 감사인 신청으로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서식 마련

3. 향후 계획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상장대기업 위주로 설계·운영되어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 위주로 설계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
- 2018년 회계개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에 보다 크게 작용한 점을 감안

2. 개선 방안 주요 내용

회계기준 적용 부담 완화		
구분	현황	개선사항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 부감사법 적용 대상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 (2022 회계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비외감기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 *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금융회사, 대형 비상장 회사 등 제외
기업·감사인 간 의견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감사인이 외부감사 진행시 재무제표 수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사소통 요청을 거부*하고 외부 컨설팅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외부감사법§6⑥의 엄격 적용 시 처벌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감사인 간 의견 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작성·배포하고, 필요시 비조치 의견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 * 허용행위: 기업 제시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전달 등 * 금지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직접 개입 등
리픽싱 조건부 증권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픽싱 조건부 RCPS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 표현 - 상장 전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리픽싱 조건부 RCPS가 기업 상장 시 적용 회계 기준이 변경되어 '부채'로 분류 - 정상 성장과정에서 관리종목 지정 가능 (주가 상승 시 RCPS 부채 증가 ⇨ 당기 손익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픽싱 조건부 RCPS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식공시로 별도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 관리 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관리종목 지정 등 기준으로 활용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거래소 내) *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
----------------	---	--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구분	현황	개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내년부터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인증 수준을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
대형 비상장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비상장사'(자산 1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①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소속 회사는 자산 1천억 원 기준 유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사와 자산 1천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 의무 대상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자산 5천억 원 이상 기업 - (예외) ①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소속 회사 등

외부감사 부담 경감

구분	현황	개선사항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감사기준(ISA)은 대형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소규모 기업에는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비상장 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 적용 * 자산 200억 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단, 상장 예정 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는 제외)
감사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회계법인은 인력 및 자원상 한계 등으로 소규모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 수행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 강화

보완 방안		
구분	현황	개선사항
공시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 내용(운영 실태·평가 보고서)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공시 실효성이 낮고,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가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상존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1회 비적정),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2회 연속 비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 - 상장유지와 관련한 페널티를 완화^(*1)하고, 개선 노력 정도를 감리조치에 반영^(*2) (*1)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제외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충실성에 따라 회계감리 조치 시 1단계 가중 또는 감경
신고포상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부정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나, 보상금액이 낮아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별 포상금 규모를 크게 증가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비용(재무제표 작성 비용, 외부감사 수감 비용 등)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외부감사법이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마무리
-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2023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
 - 법 개정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인증 수준
 - 시행령 개정사항: 대형 비상장사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 즉시 추진과제: 기업·감사인 간 의견 교환,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감사 실무 등

TAX



* 출처: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2022. 10.)

최신 세무뉴스

2022년 세무조사 운영 방향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월 21일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안', '세무조사 운영 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함. 2022년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관련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선사항
조사 규모 축소*	복합 경제 위기 상황과 COVID-19 재유행을 감안, 조사 규모 감축 기초를 유지하여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 예정 * 전체 조사 건수: (2019년) 16,008건 → (2020년) 14,190건 → (2021년) 14,454건 → (2022년 계획) 14,000건
조사 부담 완화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임.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과거 대비 상향(63%) 계획. 보다 많은 중소 납세자가 조사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
조사 시기 선택제* 확대	조사 시기 선택 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 납세자 스스로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납세자에게 희망 시기(1~3순위)를 신청받아 조사 시기 결정
적법 절차·적법 과세 확립	세무조사 착수 → 진행 → 종결 시 과세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법 절차·적법 과세 TF」 구성
탈세 엄정 대응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 탈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공정경쟁과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을 한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함. 조사대상 혐의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됨: 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 용역을 부당지원하여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②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 혐의자; ③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 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2018년 이래 최고 수준 증가

국세청은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64조 원(3,924명)으로 20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지난해보다 신고금액 (5조 원, 8.5% △) 및 신고인원 (794명, 25.4%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특이 사항 중 하나는 개인 주식 계좌 신고 급증으로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1,621명, 금액은 1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4명, 12.9조 원만큼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2021년 해외 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 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 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또한 신고계좌 소재지국 관련 특이 사항으로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 원 중 미국이 26.8조 원, 일본이 10.8조 원으로 2개국의 비중이 58.8%를 차지하였음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 공개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됨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관세청장은 9월 14일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최근 발표된 활성화 대책은 국민 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와 같은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를 포함함

구분	개선사항
국민 편의 제고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③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국세청 협업 과제) ④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⑤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⑥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⑦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⑧ 면세점 재고품 내수 판매 제도 연장 ⑨ 내수 판매 면세품의 관세 부담 경감
물류 경쟁력 강화	⑩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⑪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 부담 경감 ⑫ 해외 대량판매 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 전 발송」을 허용 ⑬ 면세점의 일괄(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⑭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⑮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최신 세무예규판례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이번 국세청 심사례에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특수관계인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공사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연 회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이에 대해 재결청인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한 배경에는 대규모 미분양과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 등 예기치 못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미수금의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한 이익분여(법령 §88 ① 6호 또는 9호)에 해당할지라도, 시공사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시행사의 경영상태와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정될 뿐 아니라, 추후 시행사의 경영상태 호전을 통해 공사대금의 회수를 강화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공사매출 증대를 기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대법 89누8095, 1990. 5. 11. 참조),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지연 회수에 대해 조세부담의 회피나 또는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에 기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결정함 (심사-법인-2021-0023, 2022. 2. 23.)

이번 국세청 심사례는 시공사가 특수관계인인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 관점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심판례(조심2020전7787, 2021. 12. 13.)도 존재하는 바, 이번 심사례의 청구법인과 같이 대규모 미분양을 비롯한 예기치 않은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지연 회수가 불가피한 시공사는 이번 심사례와 함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택 확장을 위해 양도한 사택제공기간 10년 미만 사택 양도소득의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되(법법 §55의 2 ① 2호), 다만 주주 등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령 §92의 2 ② 2호)

이번 심판례에서 청구법인은 사택제공기간이 4년에 미달하는 직원용 사택을 양도하였으나, 사택 양도의 목적이 매매차익이 아니라 직원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택을 변경(25평형 → 33평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택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이란 ① 주주 등이 아닌 임직원에게 ②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사택·주택으로서 ③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택제공기간이 불과 3년 7개월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쟁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결정함 (조심2022서 6035, 2022. 8. 31.)

이번 심판례는 현행 법인세법에 사택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사택을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종업원의 복지를 위한 사택의 대체 취득이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사택제공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사택의 양도소득을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용 사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사택의 양도 목적에 관계없이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추가과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K SOX

내부회계관리제도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해설 온라인 설명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해설 온라인 설명회를 배포하였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세부 내용은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해설 온라인 설명회' 홈페이지(<https://acc01.klca-online.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 완화 논의

2022년 9월 30일 이루어진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 완화를 논의하였으며,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자산 1,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 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습니다.

한편,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5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 제도 합리화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내용 중 코스닥 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 심사 사유에서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내지 11월 중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감시 의무 강화에 대한 대응

2022년 5월에 이뤄진 법원의 판결 결과(사건 번호 2021다279347)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관리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건설회사에서 이뤄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 건설업종에서 입찰담합이라는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상시 존재한다는 점
- 해당 회사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 기존의 윤리 강령 및 교육 등의 제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에 불과하다는 점
- 이사회 의안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절한 관리 감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



판결문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법령위반을 포함한 업무 집행을 감시 감독하여야 하며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역시 다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이사는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언급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은 Compliance Risk 관리 체계를 의미하며, 향후 높은 법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기존의 Compliance Risk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거나 신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법령위반 위험을 진단하고, 내부통제 및 대응 방안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제 운영하고 매년 평가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외이사 역시 이러한 Compliance Risk 관리 체계 수립을 요청하고 운영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Contacts



삼일PwC경영연구원

이 은 영, Director
+82 2 709 0824
eunyoung.lee@pwc.com

ESG

권 미 엽, Partner
+82 2 709 7938
miyop.kwon@pwc.com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TAX

조 영 현, Director
+82 2 3781 9238
young-hyun.jo@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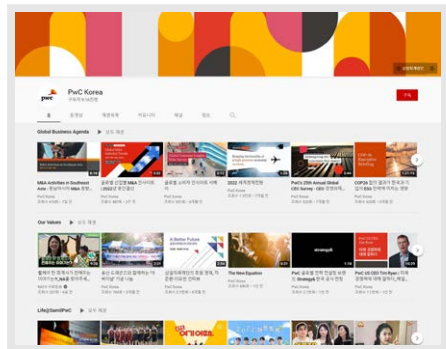
K SOX

정 구 진, Partner
+82 2 3781 9757
goojin.jeong@pwc.com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amil.com

S/N: 2210A-NL-010

© 2022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